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099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유선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김정호, 문유리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초석

담당변호사 장권

변 론 종 결 2021. 11. 24.

판 결 선 고 2022. 1. 2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8가합513264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3. 체결된

대물변제약정,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4. 체결된 대물변제약정,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을 1,093,094,79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93,094,7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3. 체결된 대물변제약정,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4. 체결된 대물변제약정,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을 1,690,033,50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90,033,5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으로 인하여 항소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1.

인정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음에 “(이하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위탁운영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을 제12 내지 14호증” 다음에 “, 제20, 21호증”을 추가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직원 K가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의 예약에 해당하는 2017. 1. 20.자 합의에 관여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도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의 예약이 체결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2018. 2. 2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와 피고가 2017. 1. 20.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 관련하여 미정산 공사대금 5억 원의 채무와 대여금에 대한 이자금 21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호텔의 일부 객실과 상가를 대물변제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음을 재확인하며, 본 합의서 작성일 이후 미분양호실을 분양한 후 분양호실에 대한 분양대금에서 분양대행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50:50으로 피고와 C가 각각 배분하기로 하고, 정산기간은 본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2017. 1. 20.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F 등부 2017년 제139호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 제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직원 K를 통하여 2017. 1.

20.자 합의서의 내용을 알았다거나 2017. 1. 20. 당시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이 체결되리라는 점을 알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① 대여금 채권 112,179,861원, ②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2016. 5. 1.부터 2017. 6. 15.까지 발생한 위탁운영 수수료 채권 45,455,160원, ③ 위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2016. 5. 1.부터 2017. 6. 15.까지 발생한 운영손실보전금 채권 542,583,462원, ④ C의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확정수익금 채무를 원고가 2018. 11. 16.과 2020. 6. 23.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392,876,311원의 구상금 채권, ⑤ 원고가 소송결과에 따라 C의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채무를 장래에 대위변제하여 취득하게 될 구상금 채권 182,797,190원(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21244호), 133,900,924원(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50532호), 104,802,782원(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992호), ⑥ 원고의 관리비 대납으로 발생한 구상금 채권 85,033,307원 및 90,404,510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각 채권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일반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각 채권이 사해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3) 구체적 판단

가) 대여금 채권 및 위탁운영 수수료 채권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3.부터 2017. 1. 18.까지 사이에 C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대여금 중 미지급 잔액이 112,179,861원인 사실, C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년간 매출액의 3.5%를 위탁운영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2016. 5. 1.부터 2017. 6. 15.까지 사이의 위 위탁운영 수수료 중 미지급 금액은 45,455,1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대여금 채권 및 2016. 5. 1.부터 2017. 2. 이전까지의 위탁운영 수수료 채권은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위탁운영 수수료 채권 중 일부는 위 각 대물변제 약정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위 위탁운영 수수료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위 각 대물변제 약정 이전에 이미 체결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에 터잡아 위탁운영 수수료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탁운영 수수료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 및 위탁운영 수수료 채권 전부는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운영손실보전금 채권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제4조 제2호로 'C는 초기운영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호텔 수분양자의 임대수익 보장기간 1년 동안에 발생하는 보장율 8% 중 4%의 해당하는 임대수익 보장금액을 호텔운영개시 시점에 신탁사에 C와 원고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1차년도 원고의 운영손실이 발생할시 동 예치금으로 보전하기로 하며, 기관경과에 따른 미실현 운영손실에 해당하는 보장금액은 추후 호텔운영 후 분기별 정산하여 C에게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2016. 5. 1.부터 2017. 6. 15.까지 발생한 원고의 운영손실 중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542,583,46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 5. 1.부터 2017. 2. 이전까지의 운영손실보전금 채권은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운영손실보전금 채권 중 일부는 위 각 대물변제 약정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위 각

대물변제 약정 이전에 이미 운영손실보전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위탁운영계약 제4조 제2호에 터 잡아 운영손실보전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운영손실보전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운영손실보전금 채권 전부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이미 발생한 구상금 채권

한편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9호증, 제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제4조 제1 내지 3호에서 ‘1. C의 수분양자에 대한 임대수익 보장기간은 준공완료 3개월 이후부터 기산하여 1년이고, 임대수익 보장율은 분양공급금액의 연 8%로 한다. 2. C는 초기운영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호텔 수분양자의 임대수익 보장기간 1년 동안에 발생하는 보장율 8% 중 4%의 해당하는 임대수익 보장금액을 호텔운영개시 시점에 신탁사에 C와 원고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1차년도 원고의 운영손실이 발생할시 동 예치금으로 보전하기로 하며, 기관경과에 따른 미실현 운영손실에 해당하는 보장금액은 추후 호텔운영 후 분기별 정산하여 C에게 반환한다. 3. 원고는 동 호텔의 위탁운영자로 수분양자에 대하여 임대수익 보장기간 1년의 임대수익 보장금액에 대하여 G가 보장하고 수분양자에게 수익보증서를 발급한다(단, 원고는 동조 2항 C의 임대수익보장 예치금의 범위를 넘어 추가 부담금이 발생시 C의 시행사 자금으로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및 C는 2014. 12. 4.경부터 2017. 2.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구분소유자)들과 위수탁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4조 제1, 2호로 ‘1. 원고 및 C가 목적 부동산을 위탁 운영하여 수분양자에게 지급할 연간 운영수익금은 수분양자가 목적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분양금액(VAT제외)를 기준으로 호텔 사용승인일로부터 만 1개월이 경과한 날의 익일부터 매월 1년간 수분양자에게 지급한다. 2. C는 수분양자와의 관계를 준수하여 총 분양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의 연 8%의 수익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한다. 단, 2년차~10년차 간은 원고가 단독으로 수분양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가) 1년차 확정수익 : 분양금액(VAT 제외) × 8%(연 이율). 나) 2년차 ~10년차 : 1개월 전에 수익배분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원고 및 C를 상대로 확정수익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2건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소송(이하 '이 사건 확정수익금 소송'이라 한다)에서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8. 11. 16. 수분양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234,893,286원을 공탁하였고, 2020. 6. 23. 수분양자들에게 157,983,02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체결 당시 장차 이 사건 호텔을 분양함에 있어 수분양자들에게 1년간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와 C 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 그 확정수익금을 C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원고와 C가 실제로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과 위 · 수탁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C가 함께 1년간 확정수익금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후 일부 수분양자들과의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확정수익금 채무가 인정되어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합계 392,876,311원(= 234,893,286원 + 157,983,025원)을 변제함으로써 내부적으로 C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 이후에 성립하였으나, 위 각 대물변제 약정 이전에 이미 위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및 수분양자들과의 위 · 수탁운영계약이 각 체결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4조 제2호 및 수분양자들과의 위 · 수탁운영계약에 터 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라) 장차 발생할 예정인 구상금 채권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다른 수분양자들에 대한 확정수익금 채무를 장래에 대위변제함으로써 C에게 취득하게 될 구상금 채권 역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구상금 채권은 아직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장차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뿐이므로, 이 부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마) 관리비 대납으로 발생한 구상금 채권

원고는, 원고가 2016. 6.부터 2017.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 중 482,205,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는데, C가 이 사건 확정수익금 소송에서 C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갖는 대납관리비 85,033,307원과 90,404,510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수분양자들이 C에 대하여 갖는 확정수익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대납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득한 대납관리비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9, 30,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C에 대하여 대납관리비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이 사건 확정수익금 소송의 판결에서, C는 원고가 장차 수분양자들을 대신하여 납부할 관리비를 포함하여 원고의 운영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C로부터 미리 받은 돈으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 이후에 성립되었고 위 각 대물변제 약정 이전에 이미 위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종합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112,179,861원, 위탁운영 수수료 채권 45,455,160원, 운영손실보전금 채권 542,583,462원, 이미 발생한 구상금 채권 392,876,311원이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위탁자가 위와 같이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고, 그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M조합, N조합, O조합, P조합, Q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객실 등에 대하여 신탁비용, 채무 등의 공제가액을 차감하고 이를 기준시점까지 현가로 할인하여 산정한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가 합계 4,660,768,380원인 점, C는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 당시 M조합에 약 18억 원, N조합에 약 9억 원, O조합에 약 4억 원, P조합에 약 5억 원, Q조합에 약 17억 원의 각 대여금 채무, 피고에 대한 약 26억 원의 채무, 원고에 대한 약 7억 원의 채무 외에도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확정수익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와 C는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합계 1,971,718,100원(= 471,718,100원 + 700,000,000원 + 8,000,000원)이 변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여 담보신탁된 부동산인 이 사건 객실 등을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객실 등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였고, 이 사건 객실 등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인 약 46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약 19억 원으로 이 사건 각 객실 등의 처분가액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객실 등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C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대물변제약정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C는 계속해서 이 사건 호텔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한 것이어서 위 각 대물변제 약정은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호텔 중 이 사건 객실 등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들은 이미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객실 등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은 C의 유일한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탁자 겸 수익자인 C, 수탁자인 주식회사 I, 시공사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과 함께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기성 지급방법으로 ‘공사비의 90%까지 기성률에 따라 기성금으로 지급하며, 잔여공사비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준공 이후에는 대물변제 조항에 준하여 지급한다. 수탁자는 미지급 공사비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타금융권 대출을 발생시켜 미지급 공사비를 변제하여야 하며, 타 금융권 대출이 실행되지 않거나 대출금액이 미지급 공사비에 미달하는 경우 대물변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공사대금 채무변제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객실 등을 이 사건 객실 등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에 현저히 못 미치는 가액으로 피고에게 대물변제한 것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호텔 운영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새로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계속 추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각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악의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 또는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 당시 C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가 변제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사대금채무 및 이자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대물변제 약정 당시 C의 신용상태를 알고 있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의 기초가 된 2017. 1. 20.자 합의서의 체결을 중재하였으며 계열사인 R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호텔 중 객실 4개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직원 K를 통하여 2017. 1. 20.자 합의서의 체결을 중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의 계열사인 R 주식회사가 이 사건 호텔 중 객실 4개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C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채권자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채권자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합계 1,093,094,794원(= 대여금 채권 112,179,861원 + 위탁운영 수수료 채권 45,455,160원 + 운영손실보전금 채권 542,583,462원 + 이미 발생한 구상금 채권 392,876,311원)의 범위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위탁자가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당초 예정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하게 하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에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단순히 말소하게 되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이때는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의 평가금액 한도 내에서 위탁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의 취소와 함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객실 등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의 평가금액인 4,660,768,380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093,094,794원보다 다액이므로, 피보전채권액인 1,093,094,794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대물변제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093,094,79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093,094,7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자현, 판사 박성준, 판사 천지성

별 지 1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W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8.35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9796

2.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X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3.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Y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3.30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9.3724

4.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Z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 분의 7.3013

5.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AA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6.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AB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192

7.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AC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2.29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6.2741

8.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AD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2.29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6.2741

9.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AE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2.29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6.2741

10.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AF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8.35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9796

1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AG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2.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AH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3.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AI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4.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AJ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3.30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9.3724

15.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AK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6.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AL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7.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AM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8.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N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8.35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9796

19.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O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20.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P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끝.

별 지 2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²

지하2층 2186.9725m²

지하1층 2253.7023m²

1층 1747.2308m²

2층 1488.9682m²

3층 1488.9682m²

4층 1488.9682m²

5층 1488.9682m²

6층 1488.9682m²

7층 1488.9682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Q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0.9964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²

2. S

대 806m²

3. T

대 781.4m²

4. U

대 233.9m²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5.9083

2.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R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3.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S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3.30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9.3724

4.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T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 분의 7.3013

5.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U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6.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V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7.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AW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2.29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6.2741

8.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AX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8.3569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²

4. U

대 233.9m²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9796

9.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²지하2층 2186.9725m²지하1층 2253.7023m²1층 1747.2308m²2층 1488.9682m²3층 1488.9682m²4층 1488.9682m²5층 1488.9682m²6층 1488.9682m²7층 1488.9682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AY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²

2. S

대 806m²

3. T

대 781.4m²

4. U

대 233.9m²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0.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AZ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BA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2.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BB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3.30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²

4. U

대 233.9m²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9.3724

13.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²

지하2층 2186.9725m²

지하1층 2253.7023m²

1층 1747.2308m²

2층 1488.9682m²

3층 1488.9682m²

4층 1488.9682m²

5층 1488.9682m²

6층 1488.9682m²

7층 1488.9682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BC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²

2. S

대 806m²

3. T

대 781.4m²

4. U

대 233.9m²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4.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BD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5.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BE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6.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BF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2.821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m²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6.4219

17.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²지하2층 2186.9725m²지하1층 2253.7023m²1층 1747.2308m²2층 1488.9682m²3층 1488.9682m²4층 1488.9682m²5층 1488.9682m²6층 1488.9682m²7층 1488.9682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BG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8.3569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²

2. S

대 806m²

3. T

대 781.4m²

4. U

대 233.9m²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9796

18.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²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BH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19.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B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20.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B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3.30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9.3724

2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BK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22.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BL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23.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BM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24.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7층 BN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25.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7층 BO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26.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7층 BP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3.30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9.3724

27.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7층 BQ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²

2. S

대 806m²

3. T

대 781.4m²

4. U

대 233.9m²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28.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²

지하2층 2186.9725m²

지하1층 2253.7023m²

1층 1747.2308m²

2층 1488.9682m²

3층 1488.9682m²

4층 1488.9682m²

5층 1488.9682m²

6층 1488.9682m²

7층 1488.9682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7층 BR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²

2. S

대 806m²

3. T

대 781.4m²

4. U

대 233.9m²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29.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7층 BS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5.946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7.3013. 끝.

별 지 3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²

지하2층 2186.9725m²

지하1층 2253.7023m²

1층 1747.2308m²

2층 1488.9682m²

3층 1488.9682m²

4층 1488.9682m²

5층 1488.9682m²

6층 1488.9682m²

7층 1488.9682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BT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5.4600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²

2. S

대 806m²

3. T

대 781.4m²

4. U

대 233.9m²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21.2313

2.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BU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3.96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17.9957

3.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BV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9.5360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19.5645

4.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BW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9920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 분의 18.8488

5.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

지하2층 2186.9725㎡

지하1층 2253.7023㎡

1층 1747.2308㎡

2층 1488.9682㎡

3층 1488.9682㎡

4층 1488.9682㎡

5층 1488.9682㎡

6층 1488.9682㎡

7층 1488.968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BX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1.62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

2. S

대 806㎡

3. T

대 781.4㎡

4. U

대 233.9㎡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17.3373

6.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D, S, T, U

E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V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숙박시설

지하3층 1838.874m'

지하2층 2186.9725m'

지하1층 2253.7023m'

1층 1747.2308m'

2층 1488.9682m'

3층 1488.9682m'

4층 1488.9682m'

5층 1488.9682m'

6층 1488.9682m'

7층 1488.9682m'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층 BY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31.8360m'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나주시 D

대 755.1m'

2. S

대 806m'

3. T

대 781.4m'

4. U

대 233.9m'

대지권의종류 : 1, 2, 3, 4.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2576.4분의 93.3657. 끝.

